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4-17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4월 21일

우정사업본부장

여객선 침몰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

1. 지원대상 :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중 안산시, 진도군 지역 피해 주민

2. 지원내용

가.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 면제 기간 : '14. 4. 21. ~ '14. 10. 31.

나.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 면제대상

- 타행환송금수수료 면제 / 통장재발행수수료 면제
- 이동우체국 자동화기기 수수료(우체국카드 이용고객 해당, 면제기간 종료 후 이용수수료 고객계좌로 자동 입금)

3. 접수방법

가. 우체국예금 고객

- 신분증 등을 통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주민임을 확인 후 접수 가능

나. 구비서류

- 금융취급수수료 : 신분증 또는 재난지역 거주확인가능 서류

다. 접수처 : 전국우체국(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는 이동우체국만 해당)